농촌체류형 쉼터.농막 운영지침 수정 배경 및 내용

□ 배경 및 내용

- ㅇ 공유 농지에 공유인 전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, 공유자 중 1인에 한해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
- ㅇ 임야의 농지대장 등재 이전에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
- ㅇ 고정식 온실, 축사 등 부지에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은 고정식 온실 또는 축사 등의 내부에 설치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

□ 비교표

당 초	변 경
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 **4. 설치 개요** **3 설치 대상 농지** [1]「농지법」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따른 농지 (사실상 농지* 포함) ㅇ 본인 소유 농지 원칙. 다만 타인 소유일 경우 "토지사용승낙서"를 받아 가능 <신설>	**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** **4. 설치 개요** **3 설치 대상 농지** [1]「농지법」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따른 농지 (사실상 농지* 포함) ㅇ 본인 소유 농지 원칙. 다만 타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경우 "토지사용승낙서"를 받아 설치 가능 - 공유 농지에서 공유인 전원이 농사짓고 있는 경우,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전원의 "토지사용승낙서"를 받는다면 토지사용에 동의를 받은 1인에 한해서 설치 가능
제2장 농막 **3. 설치 개요** **3 설치 대상 농지** ㅇ「농지법」상 모든 농지 <신설>	**제2장 농막** **3. 설치 개요** **3 설치 대상 농지** ㅇ「농지법」상 모든 농지 - 공유 농지에서 공유인 전원이 농사짓고 있는 경우,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전원의 "토지사용승낙서"를 받는다면 토지사용에 동의를 받은 1인에 한해서 설치 가능

※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북 - 자주 묻는 Q&A 수정

당 초	변 경
2. 2세대 이상 경작하는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(공유지분 소유 농지 또는 한 필지를 임차 등의 형태로 경작) · 임대차를 통하여 경작자를 1세대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	2. 2세대 이상 경작하는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(공유지분 소유 농지 또는 한 필지를 임차 등의 형태로 경작) · 임대차를 통하여 경작자를 1세대로 정하는 경우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공유자 중 1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
6. 지목이 임야인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>>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* 시행 당시('16.1.19.)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상태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했던 경우에는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, 농지대장 등재 가능 >> 다만,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지목이 임야이므로 산림부서 협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「산림법」에 의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	6. 지목이 임야인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>>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* 시행 당시('16.1.19.)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상태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했던 경우에는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나,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 필요 >> 또한,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지목이 임야이므로 산림부서 협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「산림법」에 의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
10. 고정식 온실, 축사 등 부지에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>> 따라서, 설치하고자하는 부지의 고정식 온실, 축사 등 그 필지를 통하여 본인의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이 가능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.	10. 고정식 온실, 축사 등 부지에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>> 따라서,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에 고정식 온실,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고, 본인의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는 경우라면 고정식 온실, 축사 등의 외부에 설치가 가능함.